# 손해배상(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2. 1. 2004가합8263]



## 【전문】

### 【원 고】

【피 고】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외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외 2인)

【변론종결】2005. 11. 10.

# 【주문】

###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5.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 1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원고 1, 8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피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피고 한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제주시 연동에서 의료진을 고용하여 종합의료 기관인 한라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한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 술한 의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직적합성 항원 형별검사 정밀화기술 연구개발업, 조혈모세포 배양기술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 회사는 제대혈 보관기관인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탯줄은행에는 개인들한테서 유상으로 위탁받은 가족보관형 제대혈 7천여 개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무상 공여받은 제대혈 6만여 개가 보관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6은 다발성 경화증(척추 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 원고 1, 2, 3, 4, 5, 7, 소외 1(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간경화증(간경변증)을 각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에, 피고 회사가 공급한 줄기세포로 피고 2한테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 무렵 한라병원에서 확인·판단한 병증의 진행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원고 1, 8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피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피고 한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제주시 연동에서 의료진을 고용하여 종합의료 기관인 한라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한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 술한 의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직적합성 항원 형별검사 정밀화기술 연구개발업, 조혈모세포 배양기술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 회사는 제대혈 보관기관인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탯줄은행에는 개인들한테서 유상으로 위탁받은 가족보관형 제대혈 7천여 개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무상 공여받은 제대혈 6만여 개가 보관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6은 다발성 경화증(척추 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 원고 1, 2, 3, 4, 5, 7, 소외 1(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간경화증(간경변증)을 각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에, 피고 회사가 공급한 줄기세포로 피고 2한테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 무렵 한라병원에서 확인·판단한 병증의 진행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원고 1, 8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피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피고 한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제주시 연동에서 의료진을 고용하여 종합의료 기관인 한라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한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 술한 의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직적합성 항원 형별검사 정밀화기술 연구개발업, 조혈모세포 배양기술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 회사는 제대혈 보관기관인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탯줄은행에는 개인들한테서 유상으로 위탁받은 가족보관형 제대혈 7천여 개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무상 공여받은 제대혈 6만여 개가 보관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6은 다발성 경화증(척추 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 원고 1, 2, 3, 4, 5, 7, 소외 1(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간경화증(간경변증)을 각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에, 피고 회사가 공급한 줄기세포로 피고 2한테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 무렵 한라병원에서 확인·판단한 병증의 진행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원고 1, 8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1) 피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피고 한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제주시 연동에서 의료진을 고용하여 종합의료 기관인 한라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한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 술한 의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직적합성 항원 형별검사 정밀화기술 연구개발업, 조혈모 세포 배양기술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 회사는 제대혈 보관기관인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탯줄은행에는 개인들한테서 유상으로 위탁받은 가족보관형 제대혈 7천여 개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무상 공여받은 제대혈 6만여 개가 보관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6은 다발성 경화증(척추 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 원고 1, 2, 3, 4, 5, 7, 소외 1(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간경화증(간경변증)을 각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에, 피고 회사가 공급한 줄기세포로 피고 2한테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 무렵 한라병원에서 확인·판단한 병증의 진행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원고 1, 8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피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피고 한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제주시 연동에서 의료진을 고용하여 종합의료 기관인 한라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한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 술한 의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직적합성 항원 형별검사 정밀화기술 연구개발업, 조혈모세포 배양기술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 회사는 제대혈 보관기관인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탯줄은행에는 개인들한테서 유상으로 위탁받은 가족보관형 제대혈 7천여 개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무상 공여받은 제대혈 6만여 개가 보관되어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피고 회사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6은 다발성 경화증(척추 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 원고 1, 2, 3, 4, 5, 7, 소외 1(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간경화증(간경변증)을 각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에, 피고 회사가 공급한 줄기세포로 피고 2한테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 무렵 한라병원에서 확인·판단한 병증의 진행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 【이유】

### 1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원고 1, 8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피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피고 한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제주시 연동에서 의료진을 고용하여 종합의료 기관인 한라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한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 술한 의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직적합성 항원 형별검사 정밀화기술 연구개발업, 조혈모세포 배양기술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 회사는 제대혈 보관기관인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탯줄은행에는 개인들한테서 유상으로 위탁받은 가족보관형 제대혈 7천여 개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무상 공여받은 제대혈 6만여 개가 보관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6은 다발성 경화증(척추 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 원고 1, 2, 3, 4, 5, 7, 소외 1(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간경화증(간경변증)을 각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에, 피고 회사가 공급한 줄기세포로 피고 2한테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 무렵 한라병원에서 확인 판단한 병증의 진행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원고 1, 8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피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피고 한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제주시 연동에서 의료진을 고용하여 종합의료 기관인 한라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한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 술한 의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직적합성 항원 형별검사 정밀화기술 연구개발업, 조혈모세포 배양기술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 회사는 제대혈 보관기관인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탯줄은행에는 개인들한테서 유상으로 위탁받은 가족보관형 제대혈 7천여 개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무상 공여받은 제대혈 6만여 개가 보관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6은 다발성 경화증(척추 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 원고 1, 2, 3, 4, 5, 7, 소외 1(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간경화증(간경변증)을 각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에, 피고 회사가 공급한 줄기세포로 피고 2한테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 무렵 한라병원에서 확인·판단한 병증의 진행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원고 1, 8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피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피고 한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제주시 연동에서 의료진을 고용하여 종합의료 기관인 한라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한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 술한 의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직적합성 항원 형별검사 정밀화기술 연구개발업, 조혈모세포 배양기술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 회사는 제대혈 보관기관인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탯줄은행에는 개인들한테서 유상으로 위탁받은 가족보관형 제대혈 7천여 개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무상 공여받은 제대혈 6만여 개가 보관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6은 다발성 경화증(척추 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 원고 1, 2, 3, 4, 5, 7, 소외 1(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간경화증(간경변증)을 각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에, 피고 회사가 공급한 줄기세포로 피고 2한테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 무렵 한라병원에서 확인·판단한 병증의 진행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원고 1, 8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피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피고 한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제주시 연동에서 의료진을 고용하여 종합의료 기관인 한라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한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 술한 의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직적합성 항원 형별검사 정밀화기술 연구개발업, 조혈모세포 배양기술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피고 회사는 제대혈 보관기관인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탯줄은행에는 개인들한테서 유상으로 위탁받은 가족보관형 제대혈 7천여 개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무상 공여받은 제대혈 6만여 개가 보관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6은 다발성 경화증(척추 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 원고 1, 2, 3, 4, 5, 7, 소외 1(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간경화증(간경변증)을 각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에, 피고 회사가 공급한 줄기세포로 피고 2한테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 무렵 한라병원에서 확인·판단한 병증의 진행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원고 1, 8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피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피고 한라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제주시 연동에서 의료진을 고용하여 종합의료 기관인 한라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한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 술한 의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조직적합성 항원 형별검사 정밀화기술 연구개발업, 조혈모 세포 배양기술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 회사는 제대혈 보관기관인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탯줄은행에는 개인들한테서 유상으로 위탁받은 가족보관형 제대혈 7천여 개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무상 공여받은 제대혈 6만여 개가 보관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6은 다발성 경화증(척추 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 원고 1, 2, 3, 4, 5, 7, 소외 1(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간경화증(간경변증)을 각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에, 피고 회사가 공급한 줄기세포로 피고 2한테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